운영규정 개요

Ⅰ.시설 기본정보

기 관 명	늘사랑효 재가복지센터	대표	백소정
설 치 일 자	2021.06.01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45 309-2		
전 화	031-600-9822	팩스	02-6020-8602
이 용 대 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있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위원회로부터 요양 인정자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판정한다.		
배상책임보험	『직업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가입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과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 정원에 대해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이 용 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전화, 방문등 상담, 지인 소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 약 목 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 약 기 간	-계약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때 다시 재계약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국민 기호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

	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Ⅳ.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해제등과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 권 리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신원인수인 의 무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계 약 해 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이 계약 이향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와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 숨신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한 때

Ⅴ.이용신청 및 절차

-전화 혹은 내방 하여 이용 신청한다 ->가정 방문 상담 및 계약사 작성->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

Ⅵ.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서비스 제공직원의 가족 및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할 때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서비스 중 자연사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호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Ⅶ.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 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